

# 2026년 환경신기술 개발 및 보급촉진 업무유공 포상 안내 공고

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산업 육성에 기여한 환경신기술 보유자 및 환경신기술 보급·촉진에 공헌한 자의 성과와 노고를 격려하고자 업무유공 포상 안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. 4. 6.

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

## 1

### 추진 목적

- 환경산업 육성에 기여한 환경신기술 보유자 및 환경신기술 보급·촉진에 공헌한 지자체 공무원, 유관기관 담당자 포상을 통해 환경기술 활성화 유도

## 2

### 포상대상 및 규모

- **(포상대상)** 환경신기술 보유자 및 환경신기술 보급·촉진에 기여한 자
- **(훈격·규모)**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표창 4점

포상 부문	신청자격	포상 규모	비고	부상
개발	환경신기술 보유자 또는 보유기업·기관 소속직원으로, 신기술 개발 및 사업화에 기여한 자 또는 기업·기관	2점	개인 또는 단체	100만원 상당 온누리상품권
보급 촉진	공공기관·비영리기관·지자체 소속으로 환경신기술 보급촉진 및 제도 발전에 기여한 자 또는 기관·지자체	2점		

※ 포상규모 및 부상은 접수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### 3

### 추진절차 및 일정(안)

공모 및 접수	후보자 선정 심사	포상 대상 결정	시상식
4. 6. ~ 6. 15.	7월	8월	11월

※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해당 절차에 따라 추진

### 4

### 신청 및 접수방법

- (신청기간) 2026. 4. 6.(월) ~ 6. 15.(월)
- (접수방법) 직접 방문, 우편(2026. 6. 15. 소인분 유효), 또는 전자우편으로 신청서류를 기한 내 제출
- (접수 처)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평가실 유공 포상 담당자

- 우편주소: (우)03367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본관 3층 기술평가실
- 이메일: jhw14211@keiti.re.kr, 전화번호: 02-2284-1625

- (제출서류) 아래 해당서류 각 1부

신청자격	서식	단체 (기관)	개인	
			공무원	민간인
① 정부포상 공적조서	별지 제1호	○	○	○
② 공적요약서	별지 제2호	○	○	○
③ 인사기록요약서 * 공무원, 교수·교원 (국립. 사립) 만 작성	별지 제3호	-	○	○ (해당자)
④ 이력서 * 개인(공무원 포함)만 작성	별지 제4호	-	○	○
⑤ 자체검증확인서 * 법인(기관, 단체) 및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, 일반국민 작성	별지 제5호	○	-	○ (해당자)
⑥ 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	별지 제6호	○	○	○
⑦ 장관포상에 대한 동의서	별지 제7호	○	○	○
⑧ 공적 증빙자료(자격증 등 관련 공적 증빙용)	-	○	○	○

※ 공적 증빙자료는 자유양식이나 공적조서의 내용과 일치해야 하고 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포함되어야 함

※ '임원'이라 함은 이사, 대표이사, 감사, 공장장,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함

※ 포상 관련 접수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
5

표창 자격기준 및 제한기준

○ (표창 자격기준)

구분	대상자	세부내용
개인	공무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: 표창 추천일(추천부서가 운영지원과로 추천하는 날) 기준으로 실재직기간 3년 이상*인 자로서,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2년* 이상인 자</li> <li>* 실근무기간만을 대상(임용전 병역의무복무기간, 휴직기간 등은 제외)으로 함</li> <li>타기관 소속 : 추천일 기준 실재직기간 3년 이상이고 추천 당시 공적 관련 부서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에 한함</li> <li>※ 「국가공무원법」제2조제3항제1호 및 「지방공무원법」제2조제3항제1호의 특수경력직 공무원 중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은 추천에서 제외</li> </ul>
	공공기관 근무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추천일 기준, 실근무기간 3년 이상인 자로서, 해당 분야 2년 이상 공적을 쌓은 자</li> </ul>
	일반국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추천일 기준, 해당 공적분야에서 2년 이상(실근무기간만 적용) 참여하여 현저한 공적을 쌓은 자</li> </ul>
단체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추천일 기준,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그 활동을 지속하고 있고,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기관 또는 단체</li> <li>6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추진한 주요사업을 대상으로 사업종료시 추진 실적 평가 우수기관</li> </ul>

○ (표창 제한기준)

대상자	세부내용
공무원 및 공공기관 근로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추천일 기준,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표창 수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고, 정부포상(모범공무원 포함) 수상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</li> <li>최근 2년 이내에 징계 처분을 받은 자. 단, 금품·향응수수, 공금횡령·유용, 성범죄·성희롱, 음주운전,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「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」제4조제2항(제1~6호)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(주요비위)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천 불가</li> <li>최근 1년 이내에 경고 및 주의 처분자</li> <li>기타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민원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(도박, 불륜, 사기, 강·절도, 상해, 갑질 등)</li> <li>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</li> <li>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직위해제 또는 휴직 중인 자</li> <li>기포상공적과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</li> </ul>

대상자	세부내용												
일반국민 및 단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추천일 기준,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표창 수상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또는 단체 ※ 단체표창의 경우 기표창 수상분야와 동일 분야에 대해 2년간 재포상을 제한하며, 유공분야가 달라도 연 1회를 초과할 수 없음</li> <li>○ 공·사생활을 통하여 사회의 지탄을 받거나 민원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</li> <li>○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자</li> </ul>												
	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30%;">표창 대상</th> <th style="width: 70%;">확인내용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법인(단체), 대표, 임원</td> <td>① 형사처벌 등을 받은 사업장</td> </tr> <tr> <td>법인(단체), 대표, 임원</td> <td>② 「산업안전보건법」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</td> </tr> <tr> <td>법인(단체), 대표, 임원</td> <td>③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(단체 포함) 및 그 임원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개인</td> <td>④ 「근로기준법」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</td> </tr> <tr> <td>법인(단체), 대표, 임원</td> <td>⑤ 최근 3년간 「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」등 환경 관계 법령에 따른 환경위반 단체(기관) 또는 처분 진행 중 또는 조사 중인 단체(기관)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표창 대상	확인내용	법인(단체), 대표, 임원	① 형사처벌 등을 받은 사업장	법인(단체), 대표, 임원	② 「산업안전보건법」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	법인(단체), 대표, 임원	③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(단체 포함) 및 그 임원	개인	④ 「근로기준법」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	법인(단체), 대표, 임원	⑤ 최근 3년간 「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」등 환경 관계 법령에 따른 환경위반 단체(기관) 또는 처분 진행 중 또는 조사 중인 단체(기관)
	표창 대상	확인내용											
	법인(단체), 대표, 임원	① 형사처벌 등을 받은 사업장											
	법인(단체), 대표, 임원	② 「산업안전보건법」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											
	법인(단체), 대표, 임원	③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(단체 포함) 및 그 임원											
	개인	④ 「근로기준법」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											
법인(단체), 대표, 임원	⑤ 최근 3년간 「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」등 환경 관계 법령에 따른 환경위반 단체(기관) 또는 처분 진행 중 또는 조사 중인 단체(기관)												
다. 상훈법 및 정부표창규정, 장관표창 업무지침 등에 따라 정부포상 또는 장관표창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													
라.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종으로 수여할 수 없음													
공통	다. 상훈법 및 정부표창규정, 장관표창 업무지침 등에 따라 정부포상 또는 장관표창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												
	라.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종으로 수여할 수 없음												

- 첨부 1. 신청서류 양식 및 작성요령  
2. 심사기준. 끝.